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(송기헌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12709 발의연월일: 2021. 9. 27.

발 의 자:송기헌·정성호·백혜련

이수진 · 소병철 · 김영배

최기상 • 박광온 • 박성준

김종민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2011년 충분한 사회적 경험과 전문성 등을 갖춘 판사가 재판할 수 있도록 한 '법조일원화' 제도의 도입 취지를 유지하면서, 운용과정에서 현실적인 판사 수급 여건을 고려할 수 있도록 유예기간을 조정하고자함(안 법률 제10861호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).

법률 제 호

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

법원조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법률 제10861호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 중 "2021년 12월 31일까지"를 "2026년 12월 31일까지"로, "2022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"를 "2027년 1월 1일부터 2030년 12월 31일까지"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정 혅 행 개 아 법률 제10861호 법원조직법 법률 제10861호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(판사 임용을 위한 재직연수 제2조(판사 임용을 위한 재직연수 에 관한 경과조치) 제42조제2항 에 관한 경과조치) -----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3 년 1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판사를 임용하는 경 우에는 3년 이상 제42조제1항 각 호의 직에 있던 사람 중에 서, 2018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판사를 임용하 12월 31일까지 -----는 경우에는 5년 이상 제42조 제1항 각 호의 직에 있던 사람 중에서, 2022년 1월 1일부터 ----- 2027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판사를 2030년 12월 31일까지 -----임용하는 경우에는 7년 이상 제42조제1항 각 호의 직에 있 던 사람 중에서 임용할 수 있 다.